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32
----------	-----

2024. 10. 18.(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국기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충북학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북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충북학진흥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가. 제정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 충북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충북학기본계획 및 진흥사업, 충북학연구소 및 충북학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하면서,
-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충북학”은 선사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충북학”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고】

-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6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	17.08.09.	-	-	-	21.06.30.	-	19.01.30.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	17.06.16.	21.08.17.	-	-	-	-	13.03.20.

나.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본 조례가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 충청도민의 자긍심·애향심 고취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북학”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
- ‘안 제3조’는 충북학 연구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충북학 연구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충북학 관련 정책,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등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충북학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6조’는 충북학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충북학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본 연구소의 운영·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북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안 제10조’는 위원장의 직무,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 ‘안 제12조’는 간사, ‘안 제13조’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충북도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해, 선사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충북학”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본 조례안의 충북학기본계획, 충북학진흥사업, 충북학연구소, 충북학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지역문화진흥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규정의 내용 또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문으로 충북의 다양한 학문 주체들 사이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연구 성과물의 활용 방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충북학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의 자긍심 및 애郷심을 고취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북학”이란 선사 이래 시대를 거쳐 내려온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지리적 바탕 위에 형성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정체성과 주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충북학 관련 연구기관 확충 및 연구활동 지원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북학기본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북학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충북학 관련 정책
2.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충북학 관련 연구자료 활용 및 확산
4. 그 밖에 충북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충북학진흥사업) 도지사는 충북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충북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충북학 연구인력 양성 사업
3. 충북학 관련 포럼, 심포지엄 등의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충북학연구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북학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연구소의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북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충북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
2. 충북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충북학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4. 충북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북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학에 관한 학식 및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소 담당자가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